

年金保險制度導入과 家計貯蓄性向

延 河 清

▷ 目 次 ◁

- I. 序 論
- II. 家計貯蓄模型의 構築
- III. 外國事例 實證分析比較
- IV. 韓國事例 實證分析
- 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의 社會保險制度는 公務員年金法(1960年)을嚆矢로 船員保險法(1962年; 未實施), 軍人年金法(1963年), 產業災害補償保險法(1963年) 등이 制定·公布되면서 점차 導入되기 시작하였다. 1970年代에는 1973年の 國民福祉年金法(未實施), 私立學校教員年金法(1975), 改正 醫療保險法(1977), 公務員 및

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1979)이 制定됨으로써 各種 社會保險의 受惠人口가 급속히 增加하고 있다. 現在 가장 多은 人口層을 適用對象으로 하고 있는 社會保險은 醫療保險制度로서 1981年末 現在 約 1,141萬名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總人口의 29.5%에 해당된다. 그리고 產業災害補償保險法의 適用을 받고 있는 勤勞者는 約 390萬名이 된다. 또한 公的 年金制度는 現재 軍人·公務員·私立學校教職員 등 特殊職種에 한해서 適用되고 있는데 그 規模는 約 91萬名으로서 總就業者¹⁾의 7.3%에 不過하다. 그런데 民間部門의 一般勤勞者를 對象으로 하는 國民福祉年金法은 現在도 그 施行이 保留되고 있다. 한편 勤勞基準法(第28條)에 의해서 離職 또는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一時金으로 支給되는 退職金制度가 長·短期所得保障의 部分的인 機能은 하고 있으나, 社會保險과는 性格上 相異하고 그 運營面에서도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²⁾.

本稿의 研究課題인 老齡所得保障制度로서의 年金制度가 自發的인 國民貯蓄에 미치는 效果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1) 1981年末 現在 就業者數는 1,240萬名에 이르고 있음.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 1982. 7.

2) 朴宗漢 外, 『社會保障制度改革을 위한 研究報告書』, 韓國開發研究院, 1981. 1, p.168.

分析은 여러가지 面에서 매우 어려운 課題이다. 그 主要理由는 첫째, 現行公的年金制度의 適用對象이 公務員·軍人·私立學校敎職員 등 特殊職域에 局限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經驗이 賺고 賃金勤勞者를 適用對象으로 하는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導入實施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年金制度가 所得保障制度로서 整備되어 成熟된 것은 先進國에 있어서도 數 10年 程度에 不過하며, 그나마 成熟過程에서 各國의 特性에 따라 變形되어 年金制度가 自發的 國民貯蓄性向에 미치는 影響을 比較分析하는데 必要한 ‘經驗에서 蕚積된 理論的 혹은 實證的 資料’가 充分하지 못하다. 세째,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實施가 考慮되고는 있으나 그 適用對象이 아직 確定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家計貯蓄 및 國民貯蓄全般에 걸친 相關關係의 分析은 쉽지 않다. 네째, 國民年金制度가 國民經濟全般에 미치는 作用 또는 影響이 直接的인 것 뿐 아니라 間接的·迂迴的인 것이 많고 效果의 分析도 世代內, 혹은 世代間의 問題로까지 擴大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의 效果分析이 容易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研究課題上의 褊은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本研究課題가 重要한 意義를 가질

3) 最近의 分析들은 이러한 見解에 대하여 많은 懷疑를 갖는데 특히 A.H. Munnell,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Personal Saving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74와 D.R. Leimer and S.D. Lesnoy, “Social Security and Private Saving; A Reexamination of the Time Series Evidence Using Alternative Social Security Wealth Variables”, Office of Research and Statistics, Working Paper (DHEW, 1980) 등의 實證分析은 年金制度가 貯蓄에 正(+)의 相關關係를 갖는다고 보며, 年金制度의 效果分析에 대하여 中立的 立場을 갖는 學者도 많다.

수 있는 것은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導入을 構想하고 있으며, 年金制度 自體가 老齡退職年齡階層의 生計保障에 대한 合理的 制度일 뿐 아니라, 社會經濟全般 및 國民貯蓄行態의 變化에 미치는 效果도 廣範圍할 것으로 期待되기 때문이다.

年金制度의 限界 내지 弊害라는 立場에서 볼 때, 年金制度의 實施가 被保險者の 寄與金負擔으로 可處分所得을 減少시키고, 退職老後の 生計保障을 위한 年金制度에 對한 期待 등으로 年金加入者인 國民의 自發的 貯蓄意慾을 減退시킨다는 見解가 많다³⁾. 그러나 年金制度는 老齡退職者の 生活安定에 對한 關心을 크게 하여 年金給與期待와 함께 充分한 生計를 維持하도록 準備시킴으로써 오히려 貯蓄을 促進시킬 수도 있다. 즉 個個人의 自發的 貯蓄은 可處分所得의 大小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生活習性 및 標準에 관한 社會의 通念과 社會制度 등에 의해서도 크게 左右될 수 있기 때문이다.

年金保險은 公·私의 年金制度를 막론하고 保險料(醸出料)를 徵收하여 紿與될 때까지 積立한다는 의미에서 強制貯蓄의 한 形態로 볼 수 있으며 個個人의 自發的 貯蓄에 增·減의 兩面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同時に 企業의 貯蓄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企業의 醸出料負擔 중 全額 혹은 部分으로 消費者에게 轉嫁될 수 없는 部分은 企業의 貯蓄을 蠶食할 수 있으며 또한 企業의 個別의인 各種勤勞福祉對策이 年金制度와 統合되어 企業이 負擔하는 福祉費用이 減少될 수 있다면 法人貯蓄도 增加될 餘地가 있다.

이와 같이 年金制度의 導入이 國民貯蓄에

미치는 效果는 増·減의 兩面性이 있으므로理論的 定立이 어렵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첫째, 貯蓄行態에 대한 生涯所得假說(life cycle income hypothesis)의 概念에 따라 年金制度가 國民貯蓄性向에 미치는 理論的 側面에서의 所得效果(income effect), 資產效果(wealth effect) 및 退職效果(retirement effect)를 分析할 수 있는 基本模型을 構築하였다. 둘째로는, 年金制度의 實證分析을 外國事例의 結果로서 比較·檢討하고, 세째로 우리나라에서 現在 實施되고 있는 公務員年金制度를 分析의 對象으로 全都市公務員家計貯蓄行態를 살펴봄으로써 未治하나마 앞으로 導入·實施될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國民貯蓄行態에 미칠 效果를 豊見해 보았다.

II. 家計貯蓄模型의 構築

年金制度導入時 年金加入 被保險者의 家計貯蓄性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分析模型을
構築하기 위해서는 家計貯蓄行態에 대한 보편적이고 妥當한 理論的 根據가 필요하다. 理論의인 考察은 短期貯蓄行態보다는 長期貯蓄行態에 대한 假說과 聯關하여 檢討되어야 하겠다.
年金制度의 適用對象자는 각종 紿與의 受惠者인 동시에 財源調達者로서의 二重的인 성

4) 老齡年金에 의한 貯蓄行態에 미치는 資產效果 및 退職效果의 상세한 理論的 考察은 M.S. Feldstein, "Social Security and Private Savings: International Evidence in an Extended Life-Cycle Model", M.S. Feldstein and Robert P. Inman(eds.), *The Economics of Public Services :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s Association at Turbin, Italy*, London, 1977. pp. 174~205 참조.

격을 갖게 된다. 紿與의 類型으로는 老後生活保障을 위한 老齡年金과 酿出料納入期間 동안의 各種 危險에 대한 紿與 즉, 障害年金, 遺族年金 및 返還一時金 등이 있다. 老後의 生活保障을 위한 老齡(退職)年金은 年金保險給與의 大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年金受給權者에게 定期的으로 支給되며 國家에 따라서 그 資格條件 및 紿與方法을 달리하고 있다. 紿與對象者の 紿付類型으로는 첫째, 特定加入期間 이상의 老齡退職者에 대한 自動的 資格賦與로 退職前의 賃金水準에 比例하여 紿與를 年金으로 支給하는 國家, 둘째, 積立方式에 의하여 退職前의 寄與金(contribution)과 利子에 相應하는 부분을 一時金(lump sum payment)으로 하여 紿與를 支給하는 경우, 세째, 被保險者에게 金融貸付形式으로 住宅融資, 教育費融資 등의 惠澤을 賦與하는 國家도 있다.

年金保險의 財源은 被保險者의 寄與金, 使用者(企業)의 負擔金 및 國庫의 一般財政에 의한 補助 등으로 調達되는 것이 普遍的이다.

이러한 年金制度가 家計貯蓄行態에 주는 影響은 앞에서 말한 所得效果, 資產效果 및 退職效果 등이 있다⁴⁾.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3 가지 效果의 理論的 考察을 위하여 年金制度導入이 家計貯蓄行態에 미치는 效果의 分析模型을 다음과 같이 構築하였다.

여기서

<i>SP</i>	: 1人當 實質家計貯蓄	<i>LEA</i> : 退職年齢(55歳當時)의 期待餘命
<i>DI</i>	: 1人當 實質家計可處分所得	<i>SSP</i> : 法定退職以後 年金加入者 1人當 年金給與額
<i>LP</i>	: 勞動生產性增加率	<i>SSF</i> : 年金加入者의 基本年金 이외의 1人當 年金給與額
<i>SIR</i>	: 貯蓄利子率	
<i>WP</i>	: 1人當 勤勞所得 以外의 資產價值	<i>AGE</i> : 年金制度의 成熟度(年數)
<i>INQ</i>	: 所得階層別 所得分配不平等指數	
<i>LFP 55</i>	: 退職年齡(55歳) 이후의 勞動市場參加率 ⁵⁾	
<i>DA</i>	: 老齡人口에 대한 賃金勤勞者의 扶養率 ⁶⁾	
<i>DM</i>	: 年金加入資格年齡前人口(18歳미만)에 대한 賃金勤勞者의 扶養率 ⁷⁾	

5) $LFP 55 = WR(+55)/P(+55)$, 즉 55歳 이상人口對比 55歳 이상 賃金勤勞者比.

6) $DA = [P(+55) - WR(+55)]/P(18\sim 55)$, 即 年金釀出對象人口對比 55歳 이상 非賃金勤勞者人口比.

7) $DM = P(-18)/P(18\sim 55)$, 即 年金釀出對象人口對比 18歳 미만 人口比.

8) Keynes의 消費函數에서 도출한 絶對所得假說에 따르면 貯蓄은 所得水準에 의하여 결정된다. 家計貯蓄은 所得이 없을 때 負의 性格을 나타내고 ($\alpha_1 < 0$), 限界貯蓄性向은 항상 正의 符號를 갖고 平均貯蓄性向보다 어린 所得水準에서도 크다. Keynes는 그의 假說에서 利子率 및 人口變數 역할을 論하였으나, 우리의 基本數式에서 주어진 他說明變數의 역할을 無視하고 있다 ($\alpha_2, \alpha_3, \dots, \alpha_{12} = 0$). Friedman의 恒常所得假說은 貯蓄은 永久所得의 函數로 规定하였고 利子率 및 勤勞以外의 所得과 몇 가지 社會人口變數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의 基本模型에 의하여 說明하면 貯蓄率은 勤勞所得以外의 資產의 價值($\alpha_4 < 0$)과 扶養率($\alpha_7 < 0$, $\alpha_8 < 0$)에 의하여 減少하고, 利子率($\alpha_9 > 0$)과 老齡退職(55歳)當時의 平均期待餘命($\alpha_{10} > 0$)의 增加에 의하여 增加한다. 그러나 基本模型의 他說明變數는 除外하고 있다 ($\alpha_1, \alpha_2, \alpha_5, \alpha_6, \alpha_{10}, \alpha_{11}, \alpha_{12} = 0$). Fisher의 利子率理論에 根據하여 Harrod (1948), Ando and Modigliani (1963), Modigliani (1970), Tobin (1967), 그리고 Feldstein (1977) 등 몇몇 學者에 의하여 導入發展된 生涯假說은 家計貯蓄行態에 대한 가장 積同성 있는 微觀經濟的 說明을 하고 있다. 이 假說의 기본은 退職後의 所得稼得機會의 寐失에 대한 對策으로서 그의 所得年齡時期에 貯蓄을 함으로써 老齡退職時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消費生活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所得稼得時期과 老齡退職時期의 消費行態轉으로 因해서 純計概念으로서의 장기적인 生涯貯蓄의 合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基本模型에서 諸說明變數의 家計貯蓄性向에 미치는 增·減效果에 대한 理論의線型係數(regression coefficient)에 대한 期待는 다음과 같다. 1人當 實質家計可處分所得($\alpha_1 \leq 0$), 勞動生產性的 增加率($\alpha_2 \geq 0$), 利子率의 增加($\alpha_3 > 0$), 그리고 勤勞所得 이외의 1人當 資產價值의 減少($\alpha_4 \leq 0$)와 함께 平均貯蓄率의 增加를 期待할 수 있다. 한편 社會·經濟의變數로써 所得分配不平等指數의 增加($\alpha_5 \geq 0$)와 55歳 이상 退職年齡階層의 勞動市場參加率의 低下($\alpha_6 \leq 0$)는 平均貯蓄率을 增加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平均貯蓄率은 被扶養人口階層인 55歳 이상 人口 [$P(+55) - WR(+55)$]의 增加와 18歳 미만 人口의 勤勞人口階層에 대한 依存度의 增加($\alpha_7 \leq 0$, $\alpha_8 \leq 0$), 혹은 退職年齡(55歳)當時의 期待餘命年數의 減少($\alpha_9 \geq 0$)에 따라 下落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크게 3大別할 수 있는 家計貯蓄模型인 絶對所得假說(absolute income hypothesis), 恒常所得假說(permanent income hypothesis) 및 生涯所得假說(life cycle income hypothesis) 등은 基本貯蓄模型에서 提示한 說明變數 中 몇개씩을 無視함으로써 貯蓄行態에 대하여 각기 그 說明을 달리하고 있다⁸⁾. 여기서 年金制度導入에 따르는 基本貯蓄模型이 根據를 두고 있는 生涯所得假說의 理論의 說明을

敷衍하면生涯所得假說은消費行態를勤勞期間으로부터退職期間으로移轉시킴으로써純計概念으로 볼 때長期의生涯貯蓄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M. Feldstein의 '擴張된生涯模型(extended life cycle model)'에 따르면遺產 및贈與에 의한世代間의所得 및資產의移轉이계속될경우貯蓄率은增·減의兩面性을 갖게된다. 또한經濟成長에따라각기다른世代의所得水準向上으로인한貯蓄의增加로所得對比總貯蓄率은長期으로볼때恒常增加할것이다. 따라서貯蓄率은生產性의增加,世代의흐름에따른勤勞期間과退職期間의變化및扶養階層과被扶養階層의構成變化에의하여영향을받게된다. 우리의基本模型과比較한生涯所得假說에서보면平均貯蓄性向은生產性增加($\alpha_2 \geq 0$)와退職時期의平均期待餘命年數의增加($\alpha_9 \geq 0$)에따라增加하며,勤勞所得이외의資產價值($\alpha_4 \leq 0$), 그리고扶養人口層의增加($\alpha_7 \leq 0$, $\alpha_8 \leq 0$)등에의하여減少한다. 한편利子率의增加는貯蓄率을增加시키고($\alpha_3 > 0$),勞動市場參加率의上昇($\alpha_6 \leq 0$)은退職期間을減縮시킴으로써그期間동안의消費生活을위한貯蓄動機를減少시킨다.衡平(equity)과效率性(efficiency)間의「트레이드 오프」에根據를둔所得分配의不

平等指數의 增加는 貯蓄率의 增加($\alpha_5 \geq 0$)를期待할 수 있다. 이는 可處分所得이 增加할수록 높은 貯蓄率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根據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生涯假說⁹⁾에서는 絶對所得概念이 直接的인 說明變數로서는 除外되고 있으나($\alpha_1 = 0$) 絶對所得水準의 上昇은 勞動市場參加率을 減少시킴으로써 間接的으로 貯蓄率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勞動市場參與率의 變化는 低所得層과 高所得層에서 달리 나타날 것이다¹⁰⁾.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個人은 그의 實質所得이 相對的으로 낮으면 그의 退職年齡(勤務)을 增加시킴으로써 退職後의 購買力維持를 위한 所得向上에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退職當時의 平均期待餘命年數의 增加는 그들의 勞動市場參加率을 增大시킨다. 따라서 55歲 이상 (法定退職年齡)의 勞動市場參加率은 다음과 같은 說明變數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다.

여기서 55歲 이상의 勞動市場參加率은 所得水準의 影響을 받고($\beta_1 > 0$) 그리고 老齡人口의 平均期待餘命年數의 影響을 받아($\beta_2 > 0$) (2)式은 貯蓄에 대한 基本模型에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1)式과 (2)式은 年金保險制度가 國民貯蓄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는데 좋은 說明力を 가질 수 있다.

위에서 提示한 理論的인 基本模型에서 年金
保險適用對象者에 대한 各種給與水準과 寄與
金의 크기는 平均可處分所得과 所得階層別 所
得分配不平等指數에 影響을 미침으로써 나타
나는 所得效果를 통하여 賦蓄率을 變化시킨

9) 이러한生涯假說이 根據를 둔 貯蓄函數의 導出에 관한 代表的 報告書로서는 Leff(1969), Modigliani(1970)와 Feldstein(1977) 등으로 生產性增加率 및 勤勞人口階層對比 扶養階層의 比率變化에 의한 貯蓄에 미치는 영향이 實證分析되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Modigliani는 生產性增加率 대신 經濟成長率을 變數로 使用하였고, Feldstein은 이 두 說明變數以外에 貯蓄率은 勤勞人口階層對比 退職老齡人口比, 그리고 退職當時의 平均期待餘命의 增加는 貯蓄性向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分析하였다. 한편 Tobin(1967)은 貯蓄에 대한 利子率의 變化, Modigliani(1970)는 所得分配가 貯蓄에 미치는 影響 등을 分析하고 있다.

10) M.S. Feldstein (1977), 前掲書 참조.

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所得階層의 年金保險受惠者에 대한 年金給與는 可處分所得을 增加시키고 被保險者の 寄與金은 可處分所得을 減少시킨다. 이 경우 우리의 基本模型에서 所得效果를 측정할 수 있는 媒介變數 (parameter), 즉 $\alpha_1, \alpha_4, \alpha_5$ 그리고 β_1 이 國民貯蓄에 주는 影響은 正·負의 兩面性을 갖고 있으므로豫測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年金制度導入이 貯蓄率에 미치는 正·負의 所得效果의 크기는 理論的으로 不確實하다. 積立方式 혹은 賦課方式에 의한 財源調達方法의 年金制度下에서는 被保險者の 年金給與水準이 그 寄與金과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고 所得階層別 年金保險財源에 대한 負擔比率이 階層별로 所得水準에 따라 公平하게 適用된다면 비록 위에서 말한 所得效果의 正·負效果의 合이 零이 되지는 않더라도 年金制度導入이 貯蓄性向에 미치는 所得效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資產效果(wealth effect)는 退職後 被保險者の 年金給與에 대한 期待가 直接的으로 勤勞期間의 貯蓄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被保險者家計의 각종 危險發生時의 經濟的 負擔을 年金給與形態로 補償한다면 退職時期나 勤勞時期의 死亡·障害 등과 같은 危險事故에 대한 個人的 對策인 ‘豫備的(precautionary)性格의 貯蓄’을 줄이게 되어 勤勞時期의 所得에 대한 自發的인 個人貯蓄率은 減少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반대로 年金制度導入으로 인한 教育的 刺戟效果로서 老後 혹은 退職後의 生活保障이나 勤勞期間동안의 각종 危險事

故에 대한 貯蓄이 필요함을 일깨워 줌으로써 貯蓄性向이 增加할 수도 있다¹¹⁾. 이와 같이 貯蓄性向에 대한 年金制度의 資產效果 또한 正·負의 兩面性을 모두 갖고 있다. 이는 被保險者の 年金制度에 따른 強制貯蓄의 個人의 自發的 貯蓄에 대한 代替可能性과 年金制度의 啓蒙·教育的 效果로서 退職期間의 消費 혹은 勤勞時의 危險에 대하여 年金給與를 더욱 補完하려는 努力如何에 의해 貯蓄率의 增·減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資產效果는 위에서 설명한 所得效果와 함께 理論的으로 貯蓄性向의 正·負效果의 크기를 한마디로 결정짓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年金制度가 貯蓄性向에 미치는 影響으로 退職效果(retirement effect)를 들 수 있겠다. 年金制度에 의한 年金 혹은 返還一時金에 對한 期待는 被保險者로 하여금 年金制度가 存在하지 않을 때보다 早期退職하도록 誘導할 수도 있다. 따라서 早期退職後의 老後生活保障을 위하여 이러한 退職效果는 勤勞時期의 貯蓄을 增大시키게 된다. 즉, 老齡時期의 勞動供給減少로 誘發되는 報酬比例部分給與의 減少와 早期退職에 따른 退職後生活對策을 위한 貯蓄性向의 增加로 勤勞時期의 貯蓄率은 增加한다. 이러한 年金制度가 貯蓄率에 미치는 資產效果는 (1)式과 (2)式의 媒介變數 α_{10} 과 α_{11} 로서 알 수 있으며, β_3 에서 β_4 까지의 係數를 α_6 로 乘한 數值는 退職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年金給與의 貯蓄에 미치는 資產效果는 理論的으로 增加 혹은 減少를 나타낼 수 있다($\alpha_{10}, \alpha_{11} \geq 0$). 반면에 (1)式과 (2)式에서 退職效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항상 증가하여 減少의 效果를 나타내지 않는다($\alpha_6\beta_3, \alpha_6\beta_4 \geq 0$). 또한 退

11) Phillip Cagan, *The Effect of Pension Plans on Aggregate Savings: Evidence from a Sample Survey*,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참조.

職效果에 따르는 賯蓄率의 增加가 勤勞時期와
老齡(退職)年金受給時期에 있어서의 人口增加
및 所得水準이 停滯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早期退職效果에 의한 勤勞期間의 賯蓄率
增加는 早期退職으로 인한 勤勞者의 退職後의
賯蓄率減少에 의하여 相殺된다. 그러나 人口
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賯蓄人口層의 增加
가 非賯蓄人口層의 增加보다 를 것이므로 國
民 全體의 으로 볼 때 賯蓄은 增加할 것이다.
또한 國民所得水準이 계속 증가한다면 勤勞者
의 總賯蓄增加는 早期退職勤勞者로 인한 賯蓄
의 減少보다 를 것이다. 따라서 現실적으로
人口 및 所得水準은 增加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年金制度導入으로 인한 年金加入者の 早期
退職傾向은 國民經濟에 있어서 總體的 賯蓄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貯蓄에 미치는 이러한所得·資產·退職의 諸效果는 年金制度의 成熟年數에 따라서變化될 수 있다.例로서 被保險者의 酿出時期와 紿與時期의 時間의in 差異 때문에 退職時의 年金給與가 인플레이션하여 충분한 生活保障이 될 수 없거나 혹은 年金保險財源이 負擔者인 勤勞世代의 被保險者が 당시의 年金受給權者의 紿與를 충분히 补填할 수 없으면 위에서 說明한 諸效果의 理論的 分析은 喪失될 수도 있다. 따라서 年金制度의 成熟年數와 貯蓄의 변화 혹은 老齡者의 勞動市場參加率과의 相關關係는 분명하지 못하다고 하겠다($\alpha_{12} \geq 0$, $\alpha_{\cdot 6} \beta_5 \geq 0$). 따라서 國民의 貯蓄率은 勤勞時期의 死亡, 障害 혹은 老齡退職後의 生活保障을 위한 期待給與水準보다는 被保險者の 寄與金負擔額에 따라서 더 큰 影響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의 흐름을勘案하여 資產效果를 再調整함으로써 (1)式과 (2)式을 (3), (4)式과 같이 表

示할 수 있다.

$$LFP55 = \beta_0 + \beta_1(1/DI) + \beta_2 LEA \\ + \beta_3(SST/WS) \\ + \beta_5 AGE \dots \dots \dots \quad (4)$$

여기서 被保險者的 有效年金給與率은 平均
賃金水準(WS)에 대한 年金給與(SST)의 比
率로 表示할 수 있다. 한편 有效寄與率의 媒
介變數는 資產效果($\alpha_{10} \geq 0$), 退職效果($\alpha_6\beta_3 \geq
0$), 그리고 年金制度의 成熟年數를 나타낸다
($\alpha_{11} \geq 0$, $\alpha_6\beta_4 \geq 0$).

앞에서 理論的 模型에 의한 年金制度導入으로 質蓄率變化에 미치는 資產效果 및 退職效果分析에서勘案되지 않은 중요한 說明變數는 退職勤勞者의 老後生活保障의 한 方便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家族制度의 影響이다. 즉, 家族 중 젊은 勤勞階層은 老齡退職父母 및 不具·障礙家族의 생활을 扶養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며, 이러한 樣相은 世代가 变遷하여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家族扶助의 권습은 家計의 質蓄率를 상대적으로 多少 減少시킬 것이므로, 年金制度導入에 따라 質蓄率의 影響을 받는다는生涯所得假說이 否定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扶助現象의 持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論한 資產效果 및 退職效果는 常存할 것이며, 年金制度導入에 따른 國民들의 老後生活에 대한 質蓄必要性的認識提高, 啓蒙·教育的效果로 인한 質蓄增效果도 常存할 것이다.

III. 外國事例 實證分析比較¹²⁾

年金制度가 先進諸國에서 實施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社會保障制度의 도입에 따라 家計貯蓄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한 報告書는 그리 많지 않다. 本稿는 이러한 研究報告書 중 대표적인 몇개의 實證的 研究結果를 紹約하고 國民福祉年金制度導入이 國民貯蓄率에 미칠 增·減效果를 類推하여 보기로 한다.

「크로스 쟝션」 實證分析資料로서는 Aaron(1967)¹³⁾, Pechman 등(1968)¹⁴⁾ 외에 Feldstein(1977)¹⁵⁾과 Barro(1979)¹⁶⁾ 등의 報告書가 있다. 生涯所得假說과 家計貯蓄函數를 이용하여 社會保障制度가 貯蓄率에 미치는 효과를 分析한 Aaron의 報告書(19個 標本國 對象의 最小自乘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에 의하여 推定)에서는 說明變數로서의 社會保障制度成熟年數가 貯蓄率을 증가시키고, 被保險者의 寄與金은 可處分所得을 減縮함으로써 貯蓄率에

12) 여기서는 社會保障制度가 國民貯蓄率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檢討한 報告結果를 要約하고 있다. 여기서 美國의 社會保險制度 중 대부분의 報告書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制度를 中心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의 國民福祉年金法에서도 이를 老齡, 遺族, 障碍를 모두 「커버」하고 있다.

13) Henry J. Aaron,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Comparison", Otto Eckstein(ed.), *Studies in the Economics of Income Mainten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7, pp.13~48.

14) Joseph A. Pechman, Henry J. Aaron, and Michael K. Taussing, *Social Security: Perspective for Reform*,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8.

15) M.S. Feldstein, 前掲書.

16) Robert J. Barro and Glenn M. MacDonald, "Social Security and Consumer Spending in an International Cross Se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1, June 1979, pp. 275~289.

減少效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Pechman 등의 共同報告書에 의하면 Aaron報告書와 같은 標本資料分析에서 被保險者의 年金寄與金負擔과 貯蓄率은 逆關係를 보여 주고 있으나統計上의 有意度를 檢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확장된生涯所得假說模型의 가장 포괄적인 分析을 한 Feldstein은 老齡給與와 몇개의 他社會保障變數를 說明變數로 사용하여 貯蓄性向에 미치는 效果分析을 試圖하였다. 12個 先進國과 3個 開發途上國을 標本으로 最小自乘法에 의해 推定된 數值들의 전반적인 檢證結果는生涯所得假說을 立證하고 있다. 즉, 說明變數의多少 혹은 組合에 따라 그 回歸係數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理論的으로 기대하였던 貯蓄率增·減에 영향을 나타내는 線型係數의 符號(sign)는 일치하고 있다. 國民所得의 增加率, 老齡時의 平均期待餘命年數增加 등의 說明變數는 貯蓄率을 增加시키고, 扶養家族依存度의 增加, 老齡給與의 增加 등의 說明變數는 貯蓄性向을 감소시킴을 보여 주고 있다. Barro(1979) 등은生涯所得假說模型을 根據로 16個國을 標本調査한 것으로 1人當 實質所得, 總人口對比 老齡人口의 比率, 平均賃金 對比 老齡年金給與의 比率 등의 說明變數를 사용하여 消費性向의 變化를 分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報告書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導出할 수 있겠다. Pechman과 Feldstein의 勞動市場參加率函數에 의한 推定分析에서는 年金制度導入으로 退職效果에 의한 民間貯蓄의 上昇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年金給與 때문에 老齡者가 勞動供給을 중단하므로 退職後의 生計對策을 위해 家計 및 民間貯蓄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Aaron과 Feldstein은 資產效果에 의한 貯

蓄性向減少는 退職效果에 의한 貯蓄性向增加를
相殺함으로써 年金制度는 貯蓄性向에 「마이너스」效果를 보여 주고 있음을 立證하였다. 이
와는 반대로 Barro 등의 推定에 의하면 老齡
給與의 증가는 貯蓄率을 향상시키고 退職效果
와 資產效果에 의한 貯蓄率의 증가는 貯蓄을
年金이 代替시킴으로써 야기되는 資產效果에
의한 貯蓄率의 감소를 相殺하고도 남음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勞動市場參加率函數의
직접적인 計測敘이는 退職效果와 위에서 언급
한 兩面的 資產效果에 의한 貯蓄率增加의 크
기를 결론짓기 어렵다.

家計貯蓄率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外國의
報告書 중 時系列(time series) 實證分析으
로는 美國의 時系列資料(1929~71)에 의한
Feldstein(1974)¹⁷⁾, Munnell(1974)¹⁸⁾, Barro
(1977)¹⁹⁾와 Darby(1978)²⁰⁾ 등의 研究報告書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結論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이들 報告書의 공통된 결과는 年金保險制度
가 家計貯蓄率을 감소시킨다는 假說을 立證하
지 못하고 있다. 즉, 美國의 時系列資料分析
에 의하면 年金保險制度가 家計貯蓄에 미치는
效果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
겠다. 年金保險制度가 民間貯蓄에 미치는 이
들 報告書의 結果分析에서 代表的²¹⁾인 說明變
數에 대한 回歸係數와 統計의有意度를 測定
하는 t 값을 <表 1>에 提示했다. 여기서 Munnell
과 Feldstein은 1929年 이후의 結果를 보
여 주고 있으나 모든 回歸係數는 5% 有意水
準에서 統計上 有意하지 못하다²²⁾. 그리고
Munnell, Feldstein, Barro 그리고 Darby 등
은 2次大戰後 1946~74年까지의 實證分析結果
를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모든 回歸係
數가 10% 有意水準에서 큰 意味가 없었다.
즉, 이러한 實證 analysis結果는 社會保障制度가

<表 1> 年金保險制度가 家計貯蓄에 미치는 效果

從 屬 變 數	分 析 年 度	報 告 書 ¹⁾	社會保障 回歸係數	回歸係數의 t 值
家 計 貯 蓄	1929~69	Munnell	-0.030	-1.60
消 費 支 出	1929~40, 1947~71	Feldstein	0.010	0.91
	1929~40, 1947~74	Barro	0.014	1.40
	1929~40, 1947~74	Darby	0.017	1.31
家 計 貯 蓄	1946~69	Munnell	-0.058	-1.40
消 費 支 出	1947~71	Feldstein	0.029	0.83
	1947~74	Barro	0.014	0.39
	1947~74	Darby	0.011	0.59

註 : 1) 報告書名은 本稿의 註 17)~20) 참조.

17) Martin S. Feldstein,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ep.-Oct. 1974.

18) Alice Munnell,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Personal Saving", *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74.

19) Robert J. Barro, *Social Security and Private Saving: Evidence from the U.S. Time Series*, University of Rochester, 1977.

20) Michael R. Darby,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Income and Capital Stock*,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8.

21) 代表의이라 할은 各 報告書에서 理論的으로나 實證分析에서나 가장 강력한 結論을導出하고 있는 數式을 의미함.

22) 이는 兩側檢證(two-tail test)에 의한 것임.

家計의 貯蓄率을 減縮한다는 假說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美國의 時系列資料에서 年金制度가 家計貯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年金制度가 家計貯蓄變化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 報告書는 統計上의 문제점, 年金制度變數의 選定問題 및 推定數式의 問題 등으로 年金制度의 貯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報告書에서 留意할 점은 각기 다른 標本의 時系列資料에 대한 分析結果라는 것이다. 즉, 여러 形태의 數式接近方法과 각기 다른 時系列分析에서도 年金制度가 家計貯蓄에 미치는 效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는 공통된 결론에 留意하여야 한다.

한편 Cagan(1965)²³⁾에 의하면 年金制度는 啓蒙·教育效果, 즉 老後退職者生活에 대

한豫備的인 貯蓄의 필요성에 대한 認識效果(recognition effect)에 의하여 年金制度에 가입된 階層의 貯蓄率은 年金制度에 가입되지 않은 階層의 貯蓄率보다 높은 것을 그의 標本調查에서 지적하고 있다. 被保險者의 寄與金負擔은 可處分所得의 減縮을 起起함으로써 貯蓄率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年金制度로 인한 貯蓄減少는 勤勞階層의 可處分所得을 감소시켜 負의 貯蓄效果를 초래하나 國民貯蓄에서는 負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賦課方式에서는 勤勞階層에 의한 貯蓄減少가 年金受給權者에게는 可處分所得의 增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²⁴⁾. 이와 같은 結果는 IV節에서도 어느 정도 說明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分析이 韓國事例分析과 다른 것은 그의 모델에서는 社會保障變數였던 扶養率, 勞動市場參與率, 期待餘命이 빠져 있는 대신, 所得階層別效果로서 分析하고 있다는 것이다.

年金制度에서 被保險者의 寄與金負擔이 貯蓄率變化에 미치는 효과는 適用對象者の 貯蓄行態變化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만일 寄與金에 대한 인식이 老後退職生活을 위한 貯蓄이라고 인식될 경우에는 被保險者は豫備的(precautionary) 意味에서 自發的 貯蓄을 年金制度導入 以前보다는 적게 할 것이다. 한편 啓蒙·教育的 效果에 의한 長期的인 家計財政計劃概念으로서는 貯蓄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貯蓄效果는 많은 實證分析에서, 年金制度導入이 民間貯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假說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²⁵⁾. 따라서 現在 實施 중인 公務員年金制度의 分析結果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年金制度가 貯蓄性向을 助

23) Phillip Cagan, *The Effects of Pension Plans on Aggregate Savings: Evidence from a Sample Survey*,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24) 勤勞階層에서 老齡階層으로의 所得轉嫁는 總可處分所得의 減少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젊은 勤勞年齡時期의 老齡退職時期의 貯蓄行態는 다르다. 老齡階層은 勤勞所得에 比하여 높은 消費性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Break(1974)에 의하면 全年齡을 一括하여 所得의 轉嫁(勤勞層에서 老齡層에게)는 國民貯蓄 全體에 큰 영향이 없음을 報告하고 있다 (George F. Break, "The Incidence and Economic Effect of Taxation", Alan S. Blinder and Others (eds.),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193 참조).

25) 이러한 研究報告書 이외에도 最近에 Furstenberg의 캐나다·영국·서독·프랑스·스웨덴 등 5個國의 年金制度가 國民貯蓄에 미치는 實證分析報告書에 의하면 스웨덴을 제외한 4個國은 年金制度가 家計貯蓄을 감소하게 한다고 하는 假說을 立證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社會保障費의 負擔이 國民經濟 전체에 주는 부담이 너무 커서 家計貯蓄率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George M. von Furstenberg, *Social Security versus Private Savings*,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 1979, Chapter 5~8 참조).

長하여 金融市場에 資金의 流入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年金保險制度가 政府에 의한 強制制度일 경우 民間에 의한 任意制度下에서 보다 蓄積된 年金財源의 投資를 어떤 部門에 할 것인가 하는 점이 衡平(階層間)上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IV. 韓國事例 實證分析

앞의 序論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現在 實施되고 있는 公務員, 私立學校教職員, 軍人 등의 特殊職域을 適用對象으로 하는 年金制度는

그 適用範圍가 總就業者의 7.4%로서 國民全體의 貯蓄效果에 對한 分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全國民을 위한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實施以前에 年金制度導入로 우리나라의 國民家計貯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檢討하기 위하여 公務員과 其他事務職種의 家計貯蓄行態를 比較·分析 함은 有用하다 하겠다.

따라서 20餘年間 實施되어 온 公務員年金制度下의 公務員家計貯蓄行態가 어떻게 變化했는가를 檢討하기 위하여 本稿에서는 『都市家計年報』²⁶⁾資料에 의하여 單純 貯蓄函數模型에 社會保險變數의 첨가로 인한 家計貯蓄의 움직임을 檢討하였다. 단, 貯蓄性向에 미치는 「인

〈表 2〉 年度別 家口當 諸變數의 變化推移

(단위 : 經常價格, 원)

	全都市公務員家口當			全都市公務員外 事務從事者家口當			55歲 以上 家口 主의 家口가 平均 均家口 보다 받는 補助金 ¹⁾
	家口所得	貯蓄	扶養率 (人)	家口所得	貯蓄	扶養率 (人)	
1966	16,130	350	5.08	19,420	900	5.08	- 145 ²⁾
1967	23,380	940	4.69	26,980	1,350	4.77	400
1968	26,670	530	4.87	31,710	960	4.89	- 35
1969	29,320	430	4.18	36,650	970	4.15	- 75 ²⁾
1970	25,850	1,840	4.14	40,960	2,910	4.42	5
1971	40,870	3,500	4.25	51,740	5,470	4.08	- 542 ²⁾
1972	46,180	3,830	4.26	57,950	5,830	4.16	- 990
1973	51,010	4,900	4.09	61,310	7,530	4.15	- 800
1974	66,290	5,750	4.41	69,490	8,190	4.18	755
1975	86,650	5,830	4.46	97,340	10,870	4.30	550
1976	112,630	25,460	4.33	134,320	21,370	4.26	1,295 ²⁾
1977	159,480	34,530	4.26	170,080	30,240	4.07	1,980
1978	193,750	37,620	4.06	230,140	47,590	3.90	1,410
1979	268,849	54,210	3.78	307,773	61,399	3.61	3,570
1980	343,983	75,577	3.86	389,474	74,782	3.70	7,284

註 : 1) 『都市家計年報』에서 55歲 以上 家口主의 家口가 얻는 收贈 및 補助項目과 其他所得의 其他項目의 합을 平均年齡家口主의 家口가 얻는 收贈 및 補助項目과 其他所得의 其他項目의 합으로 噴 數值임.

2) 數值變異가 큰 것에 대한 調整으로 55歲 以上 家口主家口의 補助金을 前·後年度의 數值로 單純平均화한 값을 平均年齡家口主家口의 補助金으로 噴 數值임.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26)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플레이션」效果를 배제하기 위하여 年度別(1966~80)所得 및 貯蓄에 관한 統計值는 GNP 디플레이터로加重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앞서 本稿는 全都市 公務員家計의 貯蓄行態와 公務員以外의 全都市 其他 事務職從事者家計의 貯蓄行態를 比較·分析하였다.

1. 公務員 及 其他事務職從事者的 家計貯蓄

本稿에서는 公務員 및 其他事務職從事者家計의 貯蓄行態를 比較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回歸模型을 만들었다.

$$HS_i = \alpha_1' + \alpha_2' HI_i + \alpha_3' DPE_i \dots \dots \dots (6)$$

여기서

HS_i : i 職種家口主의 家計貯蓄

HI : i職種家日主의 家計所得

DPE_i: i職種家日主의 扶養率²⁷⁾

AS : 家口 55 歳 以上 되는 家口 에

서 家口年齢 平均年齢層의 家口

보다 더 받는 各種의 補助金²⁸⁾

(5) 式은 Keynes의 絶對所得假說에 의한 貯蓄行態의 比較를 한 것인데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務員家計의 所得이 其他事務職從事者家計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限界貯蓄性向이 公務員의 경우 0.460, 其他事務職從事者の 경우 0.396을 보여 주고 있어서 年金受給對象者인 公務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²⁹⁾.

〈表 3〉 公務員 및 其他事務職種 從事者家計의 眇蓄函數比較

	區 分	<i>HI</i> (家計所得)	<i>DPE</i> (扶養率)	<i>AS</i> (補助金差異) ²⁾	<i>R</i> ²	<i>D-W</i>
數 式(5)	公 務 員	0.460 (9.545)			0.875	1.344
	其他事務職種	0.396 (8.725)			0.854	0.636
數 式(6)	公 務 員	0.460 (6.527)	119.376 (0.011)		0.875	1.345
	其他事務職種	0.323 (4.625)	-13,307.900 (-1.349)		0.873	0.881
數 式(6) ¹⁾	公 務 員	0.196 (2.508)	1,675.390 (0.406)		0.983	1.807
	其他事務職種	0.264 (6.750)	2,738.600 (1.169)		0.994	1.757
數 式(7)	公 務 員	0.464 (3.929)	344.745 (0.027)	-0.056 (-0.039)	0.875	1.346
	其他事務職種	0.280 (3.223)	-15,484.400 (-1.503)	0.829 (0.848)	0.881	1.346

註：1) 經常價格에 의한 推定임.

2) 家口本가 55 歲以上 되는 家口에선 家口本가 平均年齡이 家口보다 더 높는 各種의 補助金이,

* ()는 t 값을 의미하며, D-W는 Durbin-Watson 練數임.

27) 여기서의 扶養率은 家口當 人員數를 家口當 就業人數로 나누어 준 數值임.

28) 補助金이라 함은 子女들로부터의 收賄 및 社會保障制度에 依한 受惠金 등이다.

그리나 經常價格에 의한 彈力度分析에 의하면 公務員家計의所得에 對한 貯蓄彈力度는 1.865, 其他事務職 從事者家計의 貯蓄彈力度는 1.638로서 公務員이所得에 더 敏感한 貯蓄行態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6)式에서는 특히 敏感한 反應을 보일 두 集團間의 扶養率差異에 대하여 이들이 어떤 貯蓄行態를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 檢討하였다. <表 3>에서 (6)式에 對한 回歸分析結果에 따르면 公務員家計의 貯蓄率에 影響을 주는 說明變數로서의 扶養率은 回歸係數가 正의 符號를 보여 주고 있으나 統計的 有意度上 有意하지 못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우리의 基本貯蓄模型에서 扶養率의 增加가 貯蓄을 減少시키리라는豫想과는 달리 이러한 結果는 韓國의 인 現實에서 扶養率이 높을수록 子女의 將來를 위한 貯蓄을 增加시키려는 경향을反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³⁰⁾. 한편 經常價格에 의한 推定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統計的 有意性을 가지면서 特異한 結果를 얻을 수 있었다. 즉, 扶養率이 增加하면 公務員 및 事務職從事者家計는 공히 貯蓄을 增加시키는데 其他事務職從事者家計가 더욱 더 貯蓄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一般的으로 扶養率의 增加가 貯蓄을 減少시키리라는豫想과 달리 나타난 것으로서 核家族化된 一般家計의 경우 被扶養者の 年齡層이 2歲라고 볼 때 그들의 將來教育(平均家口主年齡은 35~36歲 정도로 나타나므로 그들의 子女들은 아직 未就學兒가 많을 것으로 判斷됨), 結婚費用 등의 對備를 위한 貯蓄行態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其他事務職從事者家計의 貯蓄增加가 公務員家計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子女教育과 그들에 대한 負擔이 더 큼을 나타내

는데 相對的으로 公務員家計가 國家로부터 子女教育에 대하여 더 많은 惠澤 및 補助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7)式은 年金과 같은 外的인所得補助가 있는 경우 그들의 貯蓄行態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比較해 보기 위한 것이다. (7)式의 變數中 하나인 ‘家口主가 55歲以上인 家口가 平均年齡의 家口보다 더 받는 各種의 補助金(AS)’은 老後를 위한 年金制度가 實施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替代할 수 있는 老後의 生計手段일 수 있다. 이것은 年金制度라는 社會的紐帶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紐帶는 核家族化의 一般化와 年金制度擴大 등에 따라 점차 替代되어 갈 것이므로 年金制度의 效果를 分析하기 위한 替代的 變數(proxy variable)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AS’變數로서 老後의 非勤勞所得에 대한 期待가 年金에 加入한 被保險者の 貯蓄函數에 어떤 影響을 줄 수 있는가를 어느 정도豫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結果는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兩者를 比較하는데 그다지 큰 意味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公務員家計의 경우 AS變數의 增加는 貯蓄을 減少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 統計的 有意度가 매우 낮으며 其他事務職從事者家計의 경우도 未來의 補助에 대하여 貯蓄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 역시 統計上 有意할만한 것은 아니다.

2. 公務員家計의 貯蓄行態에 대한 年金制度의 効果

여기에서는 可用統計를 中心으로 ‘Ⅱ. 家計

30) 앞에서 論述 ‘Ⅰ. 家計貯蓄模型의 構築’에서 본 바와 같이 被扶養階層은 一般的으로 18歲以下의 稚得能力이 없는 階層과 55歲以上 稚得能力이 없는 老齡階層으로 区分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子女教育에 대한 豫備의 意味의 貯蓄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貯蓄模型의 構築'에서 論한 生涯所得假說에 따른 基本回歸分析模型을 使用하여 諸說明變數와 平均貯蓄率과의 相關關係를 아래와 같이 分析하였다.

$$\begin{aligned} \frac{HS}{HI} = & -6.590 + 0.045DPE + 0.418LEA55 \\ & (-2.763)(0.836) \quad (2.782) \\ & -0.005LFP55 + 1.095 \frac{AS}{HI} \\ & (0.894) \quad (0.787) \\ & + 2.001 \frac{INF}{HI} \dots \dots \dots \quad (8) \\ & (0.736) \end{aligned}$$

$$R^2=0.843$$

$$D-W=2.084$$

$$\begin{aligned}
 LFP55 = & -380.324 + 0.0001HI \\
 & (2.644) (0.269) \\
 & + 26.653LEA55 - 0.001INF \\
 & (2.716) (-0.784) \\
 & \cdots \cdots \cdots (9)
 \end{aligned}$$

$$R^2=0.667$$

D-W=2,902

여기에서.

LEA55：55歲當時的 期待餘命年數

LFP55：55歲以上 労動市場參與率

INF : 1人當月釀出料

위의 (8)式과 (9)式에 의한 分析結果에서 公務員家計貯蓄에 미치는 公務員年金制度의 效果分析은 크게 4가지의 變數로서 說明될 수 있다. 즉 55歲當時 期待餘命(*LEA55*), 55歲以上 勞動市場參與率(*LFP55*), 扶養率(*DPE*), 그리고 年金財政運營을 위한 政府의 負擔金과 公務員인 被保險者的 寄與金이 어떠한 形態로 든 老齡退職被保險者の 納付하는 寄與金(*INF*) 등이다.

〈表 4〉 年度別 公務員家計의 社會保障變數 推移

	DPE (扶養率, 人)	LEA55 (55歲 當時的 期年)(待餘命年數)	LFP55 ²⁾ (55歲 以上 勞動 市場參與率, %)	IHF ¹⁾ (1人當 每月 釀出料, 周)
1966	5.08	15.62	36.9	214
1967	4.69	15.66	36.2	246
1968	4.87	15.71	39.0	320
1969	4.18	15.75	40.1	587
1970	4.14	15.79	36.9	1.042
1971	4.25	15.83	40.6	1.259
1972	4.26	15.87	40.9	1.576
1973	4.09	15.92	39.0	1.719
1974	4.41	15.96	45.5	2.098
1975	4.46	16.00	44.0	2.271
1976	4.33	16.04	46.7	3.657
1977	4.26	16.09	40.3	5.074
1978	4.06	16.13	43.3	6.384
1979	3.78	16.17	44.6	7.710
1980	3.86	16.21	43.1	8.585

註：1) 公務員年金의 年間醸出料總額을 12個月 斗 總對象者로 나눈 數值임。

2) *LEA55*와 *LFP55*의 統計值는 全職種 平均值임.

資料：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各年度；經濟企劃院，『主要業務指標』，1980。

大韓民國政府，『歲入歲出決算報告』，各卷。

첫째, 說明變數로서 55歲當時의 期待餘命(LEA55)增加는 貯蓄函數에 增·減의 效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이 變數가 貯蓄性向에 直接的으로 미치는 正의 effect이며, 다른 하나는 勞動市場參與率에 影響을 미치면서 이 變數가 貯蓄性向에 間接的으로 미치는 負의 effect이다. 前者の效果는 期待餘命의增加로 因한 老後退職期間의 延長에 對備하여 家計貯蓄率을 增加시키는 것이며 後者の效果는 餘命年數의 增加가 勞動市場參與率을 增加시킴으로써 老後生活對備에 어느 정도 餘裕를 갖도록 하여 貯蓄率을 減少시키는 것이다. 즉, 生活水準의 向上과 醫療技術의 發展은 退職勤勞層에 對한 期待餘命을 增加시킴으로써 被保險者가 勤勞年齡時期에, 老齡退職後의 生活維持를 위한 自發的인 貯蓄을 減少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說明變數로서 55歲以上 勞動市場參與率(LFP55)³¹⁾에 있어서는 公務員年金制度의 誘導退職效果를 測定할 수 있는데, 年金制度의 實施는 勞動市場의 參加率을 減少시킬 要因도 될 수 있으며, 이것은 老後를 위한 家計貯蓄率을 增加시킨다.

우리의 回歸分析에 의한 이 變數의 回歸係數는 极히 微微한 것이나 이것은 위에서 言及한 期待餘命과 關聯하여 年金制度의 效果에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즉, 年金加入者들이 老齡退職後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勞動市場의 參加가 可能하다면 期待餘命의 增加와 함께 老齡退職後의 勞動市場參與率의 增加는 家計貯蓄에 減少效果를 갖는다고 하겠다. 우리의

分析結果인 (9)式에서와 같이 期待餘命의 增加는 55歲 以上의 勤勞者勞動市場參與率을 增加시키고 이는 다시 (8)式에서와 같이 貯蓄率의 減少를 보여 주고 있다.

세째, 說明變數로서는 扶養率(DPE)을 들 수 있다. 本稿에서 引用된 扶養率은 分析家計의 全家口員數를 家口構成員 중 所得稼得者의 數로 나눈 것으로 所得稼得者가 非所得稼得者를 實質的으로 扶養하는 扶養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 數值의 範圍는, 1967年의 4.62, 그리고 1980年에 3.47 정도로서 家口當 所得稼得者가 1.2~1.3名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家口當 3.37~2.17名 정도의 稼得能力이 없는 扶養人口를 가짐을 나타낸다. 이는 分析對象者的 家口主平均年齡이 35歲 정도임을 볼 때, 이들이 2名 정도의 子女와 配偶者 그리고 몇 家口 중 하나의 家口가 父母 중 1人 정도를 扶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分析에서는 이들 階層의 貯蓄目的은 子女들에 對한 教育費와 結婚費用充當, 그리고 그들의 子女가 커짐에 따라 住居生活에 適合한 住宅 마련에 必要한 資金이라 하겠다. 즉, 本稿의 分析에서는, 公務員家計가 扶養家族으로 야기되는 消費增加慾求보다 扶養家族의 負擔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將來에 대한 支出에 더 높은 關心을 갖고 있기 때문에 貯蓄率이 扶養率의 上昇에 따라 增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째, 公務員家計貯蓄에 영향을 미치는 說明變數로서 寄與率(INF/HI)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公務員의 實質寄與率의 概念을 回歸模型에 導入한 것은 名目寄與率의 概念을 本俸基準으로 均一하게 適用하기 보다는 1人當月平均寄與率/(本俸+보너스+手當)의 概念을 適用하여 公務員의 總所得水準에 依하여 公務

31) 公務員年金制度의 停年은 55歲가主流이나 本稿에서는 이러한 假定에도 不拘하고 公務員들이 退職後에도 他職種에 再就業이 可能하다고 假定하여 分析한다.

員自身의 將來年金給與水準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豫測하고 이에 따라 貯蓄率을 決定할 것이라는 判斷에 의한 것이다. 年金給與 그 자체는 老後를 위한 自發的 貯蓄에 對하여 代替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年金給與에 對하여 公務員家計의 自發的인 貯蓄을 同一하게 본다면 (-1)의 係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理由 등으로 年金反對論者들은 年金制度가 國民貯蓄 및 資本形成에 負의 效果를 舉 뿐 아니라 國民들에게 國家에 對한 依存度를 높이는 등, 오히려 國民經濟에 逆效果만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의 分析結果는 비록 그 統計的 有意度는 낮을지라도 우리나라의 年金制度擴大에 대하여 重要한 意味를 가질 수 있다. 즉, 年金反對論의 憂慮보다는 年金制度 自體가 消費者家計로 하여금 좀더 積極的으로 老後에 對備하도록 하는 觸媒의 役割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資本의 蓄積에도 결코 負의 役割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結果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첫째, 公務員과 其他事務職從事者家計의 限界貯蓄性向比較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現行公的年金制度對象者인 公務員階層의 限界貯蓄性向이 相對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둘째, (8)式에서와 같이 說明變數로서 ‘家口主가 55歲 以上인 家口가 平均年齡인 家口보다 더 받는 各種補助金(AS)’이 貯蓄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分析結果는 公務員의 貯蓄率에 正의 效果를 보여주고 있다. 즉, 老後에 對한 各種補助金期待에 대하여 公務員家計는 오히려 貯蓄率을 增大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結論

政府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期間 동안에 老齡退職者의 所得保障策으로 社會保險形式의 國民福祉年金制度의 部分의導入를 考慮하고 있다. 따라서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導入에 따른 國民經濟의 意義中 年金制度가 國民家計貯蓄行態에 미치는 effect에 관해서는 이미 이 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先·後進國은 물론 年金制度를 導入하려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導入이 國民貯蓄率變化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檢討하기 위하여 生涯所得假說(life cycle income hypothesis)의 概念에 따라 年金制度가 國民貯蓄性向에 미치는 理論的側面에서의 所得效果(income effect), 資產效果(wealth effect) 및 退職效果(retirement effect)로 区分하여 檢討하였다. 그리고 被保險者家計貯蓄基本模型의 構築, 이에 따르는 諸說明變數의 貯蓄性向에 대한 影響分析 및 外國의 實證研究報告書의 事例調查에 의한 공통적인 결과의 推移分析 등을 통하여 앞으로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實施될 경우 國民家計貯蓄에 미치는 效果의 類推를 시도하였다. 한편 韓國의 事例分析을 위하여는 現行 公的年金制度가 그 適用對象이 公務員·軍人·私立學校教職員 등 特殊職種에 局限되어 있고 그 자체의 경험이 비교적 새롭지만, 老齡退職後의 所得保障이 實現되고 있는 公務員의 勤勞時期의 貯蓄行態와 公務員을 除外한 一般事務職種者의 勤勞時期

의 貯蓄行態를 比較分析함으로써 앞으로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實施될 경우, 우리나라 國民家計貯蓄에 미치는 效果를 類推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年金制度는 적용대상자의 老後生活保障과 각종 社會的 危險에 대한 保障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國民經濟의 循環過程에서 國民貯蓄行態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 效果에 對한 肯定的 혹은 否定的 見解가 相衝하고 있다. 年金制度의 限界 내지 弊害라는 입장에서 볼 때 年金保險이 발달하면 被保險者의 寄與金負擔에 의한 可處分所得의 減少, 그리고 老後退職者の 生活保障을 위한 年金給與의 期待 등으로 年金加入者인 國民의 自發的 貯蓄意慾을 減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國民貯蓄에 미치는 增·減效果要因中 일면에 불과하며, 비록 年金給與가 아무리 충실하여도 最低生活의 確保라는 基準에서 보면 貯蓄意慾의喪失이란 크게 우려할 바가 되지 않는다.

年金制度의導入과 國民貯蓄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寄與金의 負擔水準 및 給與水準 등 制度의 內容에 따라 家計貯蓄의 行態도 變化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年金保險의 寄與金負擔水準, 年金給與條件 및 給與水準變化 등에 따라 國民貯蓄動機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老齡年金制度가 老後退職者の 生活安定에 대한 관심을 크게 함으로써 貯蓄을 促進시킬 수도 있다. 즉, 개인의 自發的 貯蓄은 可處分所得의 大小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生活習性 및 標準에 관한 社會의 通念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本稿의 基本模型構築에서導出된 年金制度가 國民貯蓄에 미치는 增·減效果는 첫째로,

所得效果를 들 수 있다. 所得效果는 장기적인生涯週期로 볼 때 年金給與支給을 통하여 家計의 可處分所得을 증가시키고, 또 被保險者的 寄與金 負擔을 통하여 可處分所得을 감소시킨다. 즉 年金保險制度導入이 貯蓄에 주는 所得效果는 增·減의 兩側面을 갖고 있어 計量的으로 推定하기 어렵다. 둘째로, 資產效果를 들 수 있다. 이는 年金制度의 加入으로 被保險者家計의 各종 危險發生時 年金給與로 補充할 수 있다는 期待는 被保險者の 各種 危險에 대한 豐備的性格의 貯蓄을 출입으로써 自發的 意味의 貯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年金制度導入으로 인하여 國民에 대한 啓蒙·教育의 刺戟으로서 老後 혹은 退職後의 生活保障이나 勤勞時期의 各種 危險事故에 對備하여 貯蓄이 必要함을 認識시킴으로써 貯蓄率이增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資產效果 또한 所得效果와 함께 貯蓄에 미치는 增·減의 兩面的效果를 모두 갖고 있다. 세째로, 年金制度導入이 貯蓄率에 미치는 退職效果를 들 수 있다. 年金制度에 의한 年金給與 혹은 返還一時金에 대한 期待는 被保險者로 하여금 이러한 制度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早期退職하도록 誘導할 수도 있다. 따라서 早期退職後의 老後生計保障을 위하여 이러한 退職效果는 家計貯蓄을 增大시킨다. 결국 年金保險制度는 그 自體가所得再分配, 經濟的·社會的 連帶意識鼓吹 등 여러 側面에서 매우 광범위한 社會·經濟的 意義를 가지고 있는 制度일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 전체적으로 볼 때 酿出과 給與의 時間的 隔差가 길면 길수록 유리한 資本蓄積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年金制度導入이 年金加入者の 貯蓄行態에 미치는 效果는 理論的으로 國民貯蓄增大 또한

減少의兩側面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年金制度를 실시하고 있는先進諸國에서年金制度가國民貯蓄에 미치는效果에대한實證의in經驗分析은年金制度로인해自發的貯蓄이減少한다는歸無假說(null hypothesis)을立證하지못하고있다. 한편公務員의貯蓄函數에年金變數와扶養率,退職時의期待餘命등說明變數를利用,生涯所得假說基本模型에의한年金制度의效果分析結果는公務員以外의其他事務職從事者的貯蓄行態와比較할때年金制度가實施되고있는公務員階層의限界貯蓄性向이높은것으로分析되었다. 따라서앞으로國民福祉年金制度導入時國民家計貯蓄率에미치는效果는樂觀의이라고하겠다.

年金保險制度가資本蓄積에직접작용하는것은그強制的인財源의調達과給與의支給이라는두가지側面에서가능하다.調達된財源은실제로支出의이루어질때까지貯蓄으

로서資本供給의役割을하게되며,또年金受給權者에對한給與支出은有效需要를創出하게된다. 또한資本은장래를위해현재消費로부터남아있는貯蓄으로볼수있기때문에投資의機會를갖고있다. 따라서年金保險制度導入은貯蓄과投資誘引을통하여資本蓄積에직접적으로效果를미치게된다. 이러한制度導入이資本市場에미치는효과내지영향은釀出金蓄積財源의活用에서볼수있는데,이것은資本市場에대하여資金의供給者로서中樞的인役割을할수있다는점이다. 다만그運用에있어서流動性의要請,年金保險의basic目的에따르는其他여러가지規制가있어資本市場에있어서의役割에制限은있겠으나年金保險制度가強制公的年金으로써그운營主體가公共機關이라고하면國民老齡福祉의向上뿐아니라產業政策的側面에서investment의財源이될수있겠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各年度.
_____,『主要業務指標』,1980.
_____,『1978~79年韓國人の生命表』,19
80.
大韓民國政府,『歲入歲出決算報告』,各年度.
朴宗淇外,『社會保障制度改善을위한研究報
告書』,韓國開發研究院,1981.1.
延河清,『國民福祉年金制度實施와所得再分配
效果』,『韓國開發研究』,1981,가을호.
_____,『國民福祉年金制度와勞動市場波及
效果』,『韓國開發研究』,1981,겨울호.
延河清·閔載成,度,『國民經濟外福祉年金制

- 韓國開發研究院,1982.
Aaron, H.,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Comparisons", O. Eckstein(ed.), *Studies
in the Economics of Income Mainten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7.
Ando, A.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
Barro, R.J., *Social Security and Private
Saving: Evidence from the U.S. Time*

- Series*, Univ. of Rochester, 1977.
- Barro, R.J., and G.M. MacDonald, "Social Security and Consumer Spending in an International Cross Se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y*, Vol. 11, June 1979.
- Break, J.F., "The Incidence and Economic Effect of Taxation", in A.S. Blinder and Others(eds.),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 Cagan, P., *The Effect of Pension Plans on Aggregate Savings: Evidence from a Sample Survey*, N.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lumbia Univ. Press, 1965.
- Darby, M.R., *The Effects of Social Security on Income and Capital Stock*,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8.
- Feldstein, M.S.,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y*, Sep.-Oct. 1974.
- _____, "Social Security and Private Savings: International Evidence in an Extended Life-Cycle Model", in M.S. Feldstein and R.P. Inman(eds.), *The Economics of Public Service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s Association at Turbin, Italy*, London, 1977.
- Furstenberg, G.M., *Social Security versus Private Savings*,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 1979.
- Harrod, R.F., *Towards a Dynamic Economics: Some Recent Developments of Economic Theory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y*, London, 1948.
- Leff, N.H., "Dependency Rates and Savings R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Dec. 1969.
- Leimer, D.R. and S.D. Lesnoy, "Social Security and Private Saving: A Reexamination of the Time Series Evidence Using Alternative Social Security Wealth Variables," Office of Research and Statistics, Working Paper(DHEW, 1980).
-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nd Intercountry Differences in the Saving Ratio", in W.A. Eltis, M.F. Scott and J.N. Wolfe(eds.), *Induction, Growth and Trade: Essays in Honour of Sir Roy Harrod*, Oxford Univ. Press, 1970.
- Munnell, A.H.,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Personal Saving", *National Tax Journal*, Dec. 1974.
- _____,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Personal Saving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74.
- _____, *The Economics of Private Pension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2.
- Tobin, J., "Life Cycle Saving and Balanced Growth", in W.J. Fellner and Others (eds.), *Ten Economic Studies in the Tradition of Irving Fisher*, N.Y., 1967.